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합5185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안혜진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 8. 3.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접수 제167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부터 2020. 4. 17.까지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한도1)를 설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여신과목	약정체결일자	여신(한도) 금액(원)	연대보증한도 금액(원)
1	기업구매자금대출	2012. 6. 12.	1,000,000,000	240,000,000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6. 8.	90,000,000	108,000,000
3	기업구매자금대출	2016. 11. 23.	560,000,000	100,800,000
4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6. 8.	300,000,000	360,000,000
5	중소기업자금대출	2020. 4. 17.	270,000,000	64,800,000

나. 피고와 B은 부부 사이로, 2014. 4. 18.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아파트 F동 제12층 G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21. 8. 24. 위 아파트 중 자신의 소유였던 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접수 제167539호로 2020. 8. 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등기부상의 원인일자인 2020. 8. 3.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2021. 8. 24. 무렵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일자의 기재가 있더라도 그 원인일자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와 다른 시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6546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가지번호 포함)에서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인 2020. 8. 3.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1. 8. 24.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B은 2021. 8.경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외에도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로 또는 현금서비스 채무,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B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일부에 관하여(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 3, 5 대출건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2021. 11. 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렇다면 B과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은 2021년 상반기부터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B은 2021. 4. 21. N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부동산들(대구 동구 O, P, Q, R, S, T 토지)에 관하여 2021.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 B은 2021년 상반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 되었다.

③ 만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와 같이 2020. 8. 3.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데,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1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B이 이미 1년 전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1. 8. 24.에서야 갑자기 이를 이행하였다기보다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21년 상반기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처분해 오다가, 결국 2021. 8. 24.경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B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8. 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4,273,000원이며, 2022. 3. 23. 기준 위 연대보증채권 원리금은 656,485,6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8. 24.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순번	여신과목	약정체결일자	보증채권 원리금 잔액(원)
1	기업구매자금대출	2012. 6. 12.	240,000,000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6. 8.	72,173,000
3	기업구매자금대출	2016. 11. 23.	100,800,000
4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6. 8.	256,500,000
5	중소기업자금대출	2020. 4. 17.	64,800,000
합계			734,273,000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1의

가.항 표 순번 1 기재 대출로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은 여신만료일이 2013. 6. 11.인바, 위 대출에 관한 B의 보증채무는 위 여신만료일인 2013. 6. 11.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이 2012. 6. 12. 체결될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여신만료일이 2013. 6. 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만료일을 연장하여, 위 대출약정의 최종 여신만료일이 2021. 12. 3.로 연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B은 위 대출에 관한 B의 연대보증기간도 함께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최종 여신만료일로서 위 대출채무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인 2021. 12. 3.을 위 각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위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3. 6. 11.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특별한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B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해주어, 그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이며, 당시 B의 채무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3. 21.부터 2020. 12. 31.까지 합계 1,092,060,000원이 B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는 B의 처로서 B 및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대물변제에 관한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 명의 계좌에서 B에게 송금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장동규, 판사 신진경

별지

1) 해당 표의 각 여신(한도) 금액 및 연대보증한도 금액은 각 대출의 최초 약정 체결일에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